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철원군

내 용

「의료법」 제48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그런데 강원도 관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철원군 “○○○○재단”에서는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였다.

[표]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관리 현황

(단위 : 천원)

시/군	의료법인명	의료기관명	부대사업종류	운영방식	임대보증금	허가여부
철원군	○○○○재단	○○○○병원	장례식장	임대	100,000	미허가
			편의점 1	임대	30,000	미허가
			편의점 2	임대	10,000	미허가

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

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「의료법」 제90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시고,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